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13] <신설 2024. 5. 9.>
 2024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1801	00	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 로 한정한다) 1. 볶지 않은 것		0	수입전량